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 허가신청이 전력수급계획상의 계획 설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된 설비용량 내에서 열 공급의 시급성, 계통안정성 및 전력수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허가신청서 상의 허가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자 함 (안 제7조)

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 상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현행화하고자 함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1. ~ 5. 11.) 진행 중

3) 행정규제 :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절차 진행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기준 및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② (생 략) <u>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 한 공급구역에 대하여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 어서의 사업허가대상자의 선정 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④ (생 략)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 허가대상자의 평가와 선정에 관 한 기준 및 제1항제1호의 사업 계획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u> ④ (현행과 같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급구역	열							
	전기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기수급지점

비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이
이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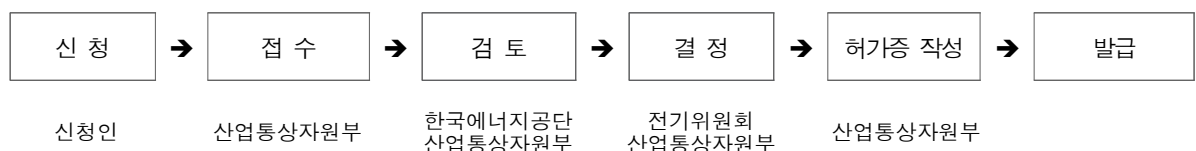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사람)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특수법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상 유의사항	공급구역은 시·군·읍·면·동·번지를 씁니다.	

처리절차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	성명	부서	직위
	책임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3. 사업허가증	수수료 없음
------	--	-----------

